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7월 29일, 최민희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7월 3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

11. 17.) 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토론·소위원회부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5.

11. 18.) 상정·축조심사·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5.

11. 21.) 상정·축조심사·의결(대안반영폐기), 번안의 건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

11. 24.) 상정·대체토론·소위심사보고·찬반토론·의결(대안반영
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최민희의원)

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,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·노동·경제·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.

그런데,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·개발·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복우)

○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가교육

위법”)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‘교육비전, 중장기 정책 방향, 학제·교원정책·대학입학정책·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’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므로,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두 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 현)

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